

< 소외계층 의료봉사 활동 사업비 지원 안내 >

- 2016년 소외계층 의료봉사 활동 사업비가 최대 1,000,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지켜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봉사기간 : 2016. 4. 12 ~ 2016. 11. 30

2. 봉사횟수 : 제한 없음

3. 사업비 : 1,000,000원 이하

4. 제출서류

가. 사업 전 : 계획서(소정양식)

나. 사업 후 : 결과보고서(소정양식)

다. 영수증 사본

라. 행사사진

5. 사업비 지원 방법

각 시간호사회 예산에서 먼저 집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지원

6. 주의사항

가. 결과보고서와 함께 모든 영수증 사본을 제출

나.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물품만 인정

다. 각 시간호사회 회원이 직접 봉사활동을 실시해야만 인정

- 한 기관에 물품만 전달하는 방법은 불인정

라. 영수증 미비나 집행내역이 잘못된 부분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제출과 결과보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문의사항 : 경기도간호사회 기획정책팀 김정희 / ☎ 031-223-4054



경기도간호사회
Gyeonggi-do Nurses Association